

대전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나2019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나20193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소2393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남수

변론 종결2024. 10. 15.

판결 선고2024. 11. 19.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소239375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가.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4,382,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6.부터 2024.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9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4,382,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6.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23. 5. 22. 피고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098,49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5. 22. D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고자 하였는데, 계좌번호를 착오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착오 송금을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D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인건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원래 송금하려고 한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도급받아 수행한 이천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피고가 2023. 4.경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2024.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하며 노무를 제공하였음은 이 법원의 2024. 9. 20.자 F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고, 여기에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2024. 9. 10.자 (주)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2024. 9. 20.자 F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3. 2.경부터 2023. 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의 2023년 2월분 및 2023년 3월분의 노무비는 각 그 다음달 20일에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2023. 5. 22.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피고가 2023.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함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노무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2023. 4.경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법원의 2024. 9. 20.자 F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2024. 9. 10.자 (주)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피고는 (주)G에 소속되거나 주G와 계약을 체결한 노무자가 아님에도 F단체 전자카드내역에 마치 2023. 4. 피고가 (주)G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잘못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근무내역에 대한 삭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노무비 중 그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법원이 원고에게 '2023년 4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식대 내역이 적힌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부제출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착오로 피고에게 송금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채39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24. 4. 26. 14,382,730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법원의 위 가집행선고는 당심의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4,382,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4. 4. 26.부터 피고의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4.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수정

판사유현정

판사강애란